

<법 제196조의5 제1항>

1의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(이하 이 호에서 “車齡”이라 한다)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第1期分(1월부터 6월까지) 및 第2期分(7월부터 12월까지)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.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.

$$\text{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} = A/2 - (A/2 \times 5/100)(n - 2)$$

A :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

n : 車齡 ( 2 ≤ n ≤ 12 )

이 경우 차령을 2년과 같거나 큰 것으로 한 것은 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기에는 차령이 2년이고 제2기에는 차령이 3년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세액의 계산을 위해서이며, 차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.

○ 차령계산 - 영제146조의3 제2항 신설

중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위한 차령의 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령기산일에 따라 계산하되, 그 차령의 계산방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제2항에서 구체적인 산식으로 정하였다.

<영 제146조의3>

② 법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”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(이하이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.

1.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= 과세연도 -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+ 1
2.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
  - 가. 제1기분 차령 = 과세연도 -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
  - 나. 제2기분 차령 = 과세연도 -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+ 1